

2026년 제7차 「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」 회의록

안건	○ 보고 의안번호 제2026-보상-7-1-1호. 2026년 제6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회의 결과 의안번호 제2026-보상-7-1-2호. 2026년 제6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심의·의결서 및 회의록 ○ 심의 의안번호 제2026-보상-7-2-1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신청 건(특-코로나19-2026-1-11) 의안번호 제2026-보상-7-2-2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신청 건(특-코로나19-2026-1-12) 의안번호 제2026-보상-7-2-3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신청 건(특-코로나19-2026-1-13) 의안번호 제2026-보상-7-2-4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신청 건(특-코로나19-2026-1-14) 의안번호 제2026-보상-7-2-5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신청 건(특-코로나19-2026-1-15) 의안번호 제2026-보상-7-2-6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신청 건(특-코로나19-2026-1-16) 의안번호 제2026-보상-7-2-7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신청 건(특-코로나19-2026-1-10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개최일시	2026년 8월 20일(목요일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장소	영상회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석위원	재적위원 15인 중 위원장 1인 포함 총 10인 출석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회의내용	<table><tr><th>의안번호</th><th>결정사항</th><th>세부내용</th></tr><tr><td>제2026-보상-7-1-1호</td><td>원안 의결</td><td>-</td></tr><tr><td>제2026-보상-7-1-2호</td><td>원안 의결</td><td>-</td></tr><tr><td>제2026-보상-7-2-1호</td><td>일부 보상</td><td>붙임1 참조</td></tr><tr><td>제2026-보상-7-2-2호</td><td>일부 보상</td><td>붙임2 참조</td></tr><tr><td>제2026-보상-7-2-3호</td><td>일부 보상</td><td>붙임3 참조</td></tr><tr><td>제2026-보상-7-2-4호</td><td>보상</td><td>붙임4 참조</td></tr><tr><td>제2026-보상-7-2-5호</td><td>기각</td><td>붙임5 참조</td></tr><tr><td>제2026-보상-7-2-6호</td><td>기각</td><td>붙임6 참조</td></tr><tr><td>제2026-보상-7-2-7호</td><td>일부보상</td><td>붙임7 참조</td></tr></table>	의안번호	결정사항	세부내용	제2026-보상-7-1-1호	원안 의결	-	제2026-보상-7-1-2호	원안 의결	-	제2026-보상-7-2-1호	일부 보상	붙임1 참조	제2026-보상-7-2-2호	일부 보상	붙임2 참조	제2026-보상-7-2-3호	일부 보상	붙임3 참조	제2026-보상-7-2-4호	보상	붙임4 참조	제2026-보상-7-2-5호	기각	붙임5 참조	제2026-보상-7-2-6호	기각	붙임6 참조	제2026-보상-7-2-7호	일부보상	붙임7 참조
의안번호	결정사항	세부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2026-보상-7-1-1호	원안 의결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2026-보상-7-1-2호	원안 의결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2026-보상-7-2-1호	일부 보상	붙임1 참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2026-보상-7-2-2호	일부 보상	붙임2 참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2026-보상-7-2-3호	일부 보상	붙임3 참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2026-보상-7-2-4호	보상	붙임4 참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2026-보상-7-2-5호	기각	붙임5 참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2026-보상-7-2-6호	기각	붙임6 참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2026-보상-7-2-7호	일부보상	붙임7 참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위 안건들에 관한 2026년도 제7차 「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」의 회의록을 작성합니다.

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○○○/여성/65세/아스트라제네카 2차/혈관염·어깨파열 및 건증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임상적으로 두드러기로 표현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이상반응과 구별되는 혈관염 소견이며, 백신 접종 후 혈관염 발생 및 지속되는 경우의 보고가 있다는 전문가 자문의견을 고려할 때 혈관염 관련한 보상은 인정이 타당함
- 어깨 부위의 힘줄 및 연골 파열은 전형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구조적 손상에 해당하므로,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움

다. 결정사항
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일부 보상(혈관염 : 보상, 그 외 질환 : 기각)

라. 기타

- 해당 없음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○○○/여성/38세/화이자 1차/두드러기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백신이 기존 두드러기의 악화인자로 작용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이 타당함
- 1차 접종일 기준으로는 내원일이 51일째이나, 2차 접종일 기준으로는
으로 보면 단기간 내 내원한 점을 고려하여 일정 보상 기간을 산정해
인정함이 타당함

다. 결정사항
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일부 보상(보상 기간: '21.12.24.까지)

라. 기타

- 해당 없음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○○○/여성/50세/화이자 2차/두드러기·홍통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백신이 두드러기의 유발 요인인 경우 두드러기가 길게 지속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자문의견을 참고하여 약 2년 동안 통원 치료한 것에 대해서도 인과관계 인정 가능함
- 홍통 증상 관련하여 심근효소, 심전도 등 검사 결과 심근·심낭염에 대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, 백신 접종으로 발생하는 심장기능 저하나 염증 반응과의 연관성이 부족함

다. 결정사항
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일부 보상(두드러기 : 보상, 그 외 질환 : 기각)

라. 기타

- 해당 없음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○○○/남성/89세/화이자 4차/램지헌트증후군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램지헌트증후군은 통상 수포를 동반하나, 무수포성 대상포진(zoster sine herpette) 사례도 존재하며, 안면마비 증상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보상 인정 가능함
- 대상포진이 아닌 바이러스 등 다른 원인을 고려하더라도 백신 접종과 관련된 증상이라면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움

다. 결정사항
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보상

라. 기타

- 해당 없음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○○○/여성/56세/모더나 1차/두통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비전형적 두통의 일종으로 판단되며, MRA 및 MRI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었으며 피해조사반 결과 역시 평가 불가능(Unclassifiable)으로 분류된 점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

다. 결정사항
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기각

라. 기타

- 해당 없음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000/여성/56세/모더나 2차/대상포진 의증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발생 부위, 통증 표현 등으로 볼 때 대상포진 보다는 다양한 일상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단순 포진 가능성이 높음
- 접종 후 49일 경과 시점의 발생은 백신 접종에 따른 피로 및 면역 반응의 영향으로 보기에선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함

다. 결정사항

- 위원간 의견 차이가 있어 서면으로 의결하기로 함
 - (서면 의견 종합) 대상포진 의증으로 대상포진을 확진할 수 있는 객관적 검사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임상양상상 단순포진의 가능성이 있으며, 단순포진의 경우 다양한 일상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, 백신 접종 후 49일 후에 백신에 의해 해당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할 근거가 부재하므로 특별법에 따른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려움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기각

라. 기타

- 해당 없음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○○○/남성/63세/아스트라제네카 1차/발작성 심방세동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백신 접종 전 부정맥(발작성 심방세동 등) 기저질환 이력이 확인되므로, 백신 접종으로 일시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초기 응급실 내원 치료에 한하여 보상을 인정함이 타당함
- 초기 응급실 방문 이후 수일간은 시간적 개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, 이후 추가접종력에 따른 영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
- 피접종인의 고혈압 약 임의중단, 심전기록기 삽입(ILR) 권유 거부 등 의료진 지시에 따르지 않아 확대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, 일정 기간 이후의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임

다. 결정사항

- 위원간 의견 차이가 있어 서면으로 의결하기로 함
 - (서면 의견 종합) 백신 접종 직후 발생한 급성기 심방세동 증상은 피접종인의 기왕력을 고려하더라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일시적 악화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해당기간(~'21.10.30.까지)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음. 다만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나 발생한 심부전 악화 등은 기저 심혈관질환의 자연경과 및 피접종인의 임의 약물 중단, 코로나19 감염 등에 의한 결과로 판단됨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일부 보상(보상 기간: '21.10.30.까지)

라. 기타

- 해당 없음